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건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9-111호
청구인 ○○○
피청구인 □□학교장
재결일자 2019. 10. 14.

주문

피청구인이 201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을 『서면사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I. 사건개요

가. 피해학생이 2019. 7. 12. 수행평가시간이 끝나 청구인이 풀지 못한 시험지를 걷어가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더러워’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배를 때렸다.

나. 이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2019. 7. 2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2019. 7. 23.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 조치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더러워’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학생의 침이 청구인의 얼굴에 튀자, 자신의 기분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 상대에 대한 모욕이나 언어폭력을 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은 교과서를 통해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용어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한 청구인의 말을 폭력적으로 받아들이는 피해학생의 사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가해학생 처분은 무효 되고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학생에게 ‘더러워, 역겨워’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19. 5월부터 피해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왔으며, 청구인은 혼잣말로 ‘더러워’라고 말한 것임에도,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도구와 맨주먹으로 총23회 이상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
- 다. 청구인은 또래에 비해 체격과 키가 작고, 피해학생보다도 명백하게 작은 편으로, 폭력을 싫어하며, 유사 폭력행위만 보아도 고통스러움을 공감할 만큼 청구인 측은 폭력에 민감하고, 청구인은 행동이 과격한 피해학생을 두려워하는데 애써 심경을 건드려 맞을 이유는 없었다.
-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침이 튀어 언어폭력을 의도하지 않고 단 한번 ‘더러워’라고 말한 것을 언어폭력으로 부당하게 해석하고 적

용하였으며, 피해학생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청구인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매우 가혹하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해학생의 진술서 및 학폭위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이 사안 이전에도 2회에 걸쳐 ‘더럽다, 역겹다’라는 표현을 하였고,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그러한 말을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수행평가지를 걷는 과정에서 ‘더러워’라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또 듣게 되자, 청구인의 배를 때린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청구인이 언어폭력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 나. 청구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1점, 지속성 2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1점 총 5점이 산출되어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해당하였으나, 청구인의 선도 가능성은 보고 1호 서면사과 조치로 경감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위해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병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치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 다. 청구인은 2019. 5월부터 피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사건 당일 피해학생으로부터 23회 이상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서 및 학폭위에서 청구인 측은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 라. 학교에서는 언어의 사전적 의미를 가르치고, 그 언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는 가해학생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체폭력의 강도와 횟수를 떠나 피해학생이 느낀 감정을 헤아리도록

록 하고, 언어폭력 또한 피해학생이 그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느낄 수 있는 의미라면 가해학생에게 재발방지 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록, 관련 학생이 작성한 ‘나를 자라게 하는 글’, 행정심판에서 의 구술심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해학생이 2019. 7. 12. 수행평가시간이 끝나 청구인이 풀지 못한 시험지를 걷어가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더러워’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배를 때렸다.
- 나. 가해학생(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학생에게 ‘더러워’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모욕감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

3. 판단

가. 학교 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학교폭력 행위 중 ‘모욕’이란 찌질이, 바보 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인천광역시교육청 발간 2019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가이드북 참조).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들, 자치위원회 회의록, 구술심리결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회 이상 ‘더러워’라고 말하여 피해학생이 모욕감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자치위원회는 모두 학교폭력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보통(2점), 고의성 없음(0점),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높음(1점), 화해정도 높음(1점)으로 판단하여 합계 총 5점으로 3호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나, 선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호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병과조치로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그 직후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서로 화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2호 조치 및 이에 따른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은 관련 학생에 대한 처분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반하여 과중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1호 처분 이외에 2호 처분 및 특별교육을 병과한 처분은 너무 과 중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호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